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6. 16.

의안 번호	586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1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수영장 신규 운영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2(사용료)에 수영강좌 등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영하고, 수강료 감면 범위를 사용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행정안 전부 법령불부합자치법규 정비 개정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강료 감면 규정을 사용료 감면으로 확대(안 제9조)

○ 수영강좌 및 자유수영 등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추가(안 제9조제4항의 별표 2)

○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자치법규 정비 개정요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확정 및 개정요청(서울시 법무담당관-3288, 22.3.8.)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감사담당관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집행부 제출안 참조)

2) 입법예고(2022.4.15. ~ 2022.5.6.) 결과, 내부의견 수렴(일부용어 정비)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안 제8조(사용료 등) 제1항은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자곡문화센터 수영장이 신설되었기에 “별표 2” 수강료란에 수영강좌와 자유수영을 추가하였고, 이용료란에 자유수영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였음

- 수영강좌 수강료는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주6회를 최대로 하여 월 92,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수영장 이용료는 구립 체육시설 수영장과 동일하게 성인1회 5,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표 1> 체육시설 수영강좌 사용료(수강료) 비교 현황

구분		수강료(단위: 원)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강남구	수영강좌	25,000	36,000	50,000	64,000	78,000	92,000
서초구	수영강좌	20,000	44,000	68,000	77,000	87,000	97,000
중구	수영강습료	-	45,000	57,000	-	-	-
종로구	수영강습료	17,600	35,200	52,800	70,400	79,200	89,100
중랑구	수영강습료	13,600	27,200	40,800	54,400	68,000	81,600

- <표 1>과 같이 수영강좌 수강료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중랑구가 다소 저렴한 경향임

- 강남 3구 중 송파구는 구립 체육시설 조례 상 수영장 및 수영강좌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은 기존 제9조의 제목 “(수강료 감면 및 반환)”을 “(사용료 감면 및 반환)”으로 정비하여 수강료에만 국한된 감면 항목을 사용료로 확대시킨 것임

* 예컨대, 조례가 개정되어 사용료 감면이 확대될 경우, 65세 이상 주민이 자곡문화센터 골프연습장을 1회 이용할 경우, 사용료 10,000원의 50%인 5,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됨.

- 현재 강남구 문화센터의 사용료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외에 안 제9조는 제1항제7호의 “만 65세”, 제2항제1호의 가목 “만 13세”, 제2항제3호의 “만 13세”에서 “만”자를 삭제하고, 제2항제2호 “만 7세 이하”를 “8세 미만”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입법관행적으로 연령을 표기할 때, “만”자를 삭제하는 추세를 따르는 것[1]이며, 본 안건 개정 이전에도 다수의 연령 표기 조례개정안들은 “만”자를 삭제해오고 있음

○ 이외에 안 제13조(이용 등의 제한)은 현행 조례 제13조(이용 등의 제한)가 문화센터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 “제1호 정신장애인”을 출입제한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

1) 현재는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혼재해 쓰고 있음(동아일보, '22.4.12.) 별도의 통일된 연령 표기 지침은 없음. 따라서 신정부에서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한 바 있음. 국회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21년 6월, 황주홍 국회의원이 '19년 1월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음.

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2],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3],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4]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5] 등
- 실정법을 위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주요사항임
- 이를 위해 현행 제13조의 "제1호 정신장애인"을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정비하려는 것임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6

제출연월일 : 2022. 6. 3.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주민자치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문화센터 수영장 신규 운영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사용료)에 수영강좌 등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영 및 수강료 감면 범위를 사용료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자치법규 정비 개정요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영강좌 및 자유수영 등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별표 2에 추가

나. 수강료 감면 규정을 사용료 감면으로 확대

다.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자치법규 정비 개정요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4.15. ~ 2021.5.06.)결과, 내부 의견 수렴

- 일부용어 정비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성별영향평가서 분석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강료 감면 및 반환)”을 “(사용료 감면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강료”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만 13세까지”를 “13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만 7세 이하”를 “8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만 13세까지”를 “13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 (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골프강좌	3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헬스강좌	-	-	30,000원	-	-	45,000원	
	수영강좌	25,000원	36,000원	50,000원	64,000원	78,000원	92,000원	
	자유수영	-	30,000원	40,000원	-	50,000원	-	
이용료	골프연습장	1회 이용권 10,000원(레슨제외)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정원미달일 경우에 한정함
	헬스장	1회 이용권 4,000원(레슨제외)						
	수영장	자유수영 : 성인(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자유수영 운영시간에 한정함
대관료	체육·문화·취미교실	1회(1시간) 30,000원 ~ 60,000원						
	음악연습실	1회(1시간) 10,000원 ~ 30,000원						
	문화센터 대강당	1회(2시간)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각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단위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한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강료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1항의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사용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7. ----------65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용료----------.
1. 50퍼센트	1. ------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가. ---------- 13세까지---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30퍼센트 :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2. ------- 8세 미만---------- ---

3. 1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③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할 때,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 ---------- ----- 13세까지----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사용료 ----------
제13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2. ~ 5. (생 략)	제13조(이용 등의 제한) ---------- ---------- ---------- ----------. <삭 제>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2>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각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단위 1회 1시간 기준 금액임.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골프강좌	3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헬스강좌	-	-	30,000원	-	-	45,000원	
이용료	골프 연습장	1회 이용권 10,000원(레슨제외)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정원미달일 경우에 한정함
	헬스장	1회 이용권 4,000원(레슨제외)						
대관료	체육·문화·취미교실	1회(1시간) 30,000원 ~ 60,000원						
	음악 연습실	1회(1시간) 10,000원 ~ 30,000원						
	문화센터 대강당	1회(2시간)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강료	일반강좌	12,000원	24,000원	36,000원	42,000원	50,000원	60,000원	
	특화강좌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	
	정예강좌(비할인)	25,000원 ~ 40,000원	50,000원 ~ 80,000원	75,000원 ~ 120,000원	-	-	-	
	골프강좌	3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110,000원	120,000원	
	헬스강좌	-	-	30,000원	-	-	45,000원	
	수영강좌	25,000원	36,000원	50,000원	64,000원	78,000원	92,000원	
	자유수영	-	30,000원	40,000원	-	50,000원	-	
이용료	골프 연습장	1회 이용권 10,000원(레슨제외)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정원미달일 경우에 한정함
	헬스장	1회 이용권 4,000원(레슨제외)						
	수영장	자유수영 : 성인(1회 5,000원, 월2회 8,000원) 청소년(1회 4,000원, 월4회 14,000원)						자유수영 운영시간에 한정함
대관료	체육·문화·취미교실	1회(1시간) 30,000원 ~ 60,000원						
	음악 연습실	1회(1시간) 10,000원 ~ 30,000원						
	문화센터 대강당	1회(2시간) 80,000원 ~ 350,000원						
비고	○ 강좌의 정의 - 일반강좌 :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화강좌 :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 정예강좌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개인별 지도가 필요하거나. 강좌 특성상 모집정원이 12명 이하인 강좌 ○ 강좌 운영횟수는 주1회 기준 4회를 기본으로 하여 수강료를 책정하되, 센터 운영여건에 따라 기준 횟수 미달 시 수강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각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단위 1회 1명 1시간 기준으로 한다. ○ 특정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주 변경내용이 문화센터 사용료(별표2)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주사보 권미경(02-3423-5203)